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. 3. 31 선고 2020가단146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3. 31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9. 8. 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. 8. 13. 접수 제4317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한소희

별지